

예산성과금 운영
시행세칙

부천도시공사 예산성과금 운영 시행세칙

제정 2017.12.29. 세칙 제11호

(타)개정 2020.09.18. 세칙 제59호

개정 2021.07.01. 세칙 제6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부천도시공사의 예산절감이나 수입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예산성과금 제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성과금”이란 예산절감이나 영업 및 당기순이익 증가와 수입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이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연봉·제수당 및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및 행정운영 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3. “예산절감”이란 자발적인 경영혁신 및 업무개선, 제안 또는 신공법도입 등으로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예산이 현저히 절약된 경우를 말한다.
4. “경상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운영 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5. “수입목표 초과”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전년과 동일한 여건에서 업무개선 또는 신규 세입원 발굴 등으로 해당 수입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등

제4조(예산성과금 지급요건)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자체적으로 경영혁신을 통하여 직제축소 및 정원 감축을 통한 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2.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동일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업무개선, 제안, 신공법 도입 등으로 예산을 현저히 절감한 경우
3. 새로운 제도 발굴 또는 업무개선 등을 통하여 경상경비를 절감(권고절감분은 제외한다)하면서 동일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4. 수입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5.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12퍼센트 이상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제5조(지급기준 등)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급절차)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심사주관부서가 정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심사를 신청한 경우,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성과금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예산성과금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급하되, 협의과정에서 지급사유가 허위 또는 오류가 있거나 지

급성격이 아닌 사항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지급방법) ① 예산절감 또는 수입목표 초과가 개인적 노력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직원을, 집단적 노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등지급시 그 분배기준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③ 예산성과금 지급이 결정된 자가 퇴직 또는 사망시에는 퇴직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④ 성과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예산성과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결정된 성과금 지급금액의 비율대로 예산을 안분하여 지급한다.

제8조(지급시기) ①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수입목표 초과달성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해당연도 또는 익년도 3월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시장의 결산 승인 익월 중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공사 임직원 2명, 부천시 공무원 2명, 외부전문가 2명 등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공사 임직원은 예산성과금 심사를 주관하는 본부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부천시 공무원은 예산·재정 담당부서 및 대행사업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④ 외부전문가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공사 사업관련 전문지식

이 풍부한 인사 중 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예산성과금 심사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운영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사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07.01.>

제10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예산 절감액 및 수입목표 초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심사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이미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 기술, 공법의 적용여부
2. 제도개선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사장 지시사항 이행 등 개선한 내용이 자발적 노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3.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를 과다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4. 공사 내부의 노력이 아닌 사업확장, 사업조정, 요금인상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기여정도에 따른 성과금 차등지급의 타당성 등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을 포함하여 이 세칙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 등”이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자 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09.18.>

③ 제1항에 따른 의결이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20.09.18.>

제14조(심사결정) 예산성과금 심사결정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
2. 예산성과금 지급불가 결정
3.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내용이 자발적 노력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단순한 아이디어 제고, 새로운 제도개선이나 신공법 적용 등 창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절감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예산절감 실적이 없는 경우, 수입증대가 공기업 내부의 노력이 아니고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기타 일상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예산절감 등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도록 결정

제1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원격영상회의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직원 및 공사 관계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자료의 사전수집, 회의안건의 사전검토, 별도의 자문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토수당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18.]

제17조(후속조치) ① 감축된 인력의 인건비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에서 해당 인원을 감축하고 익년도 예산에 감액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축인력은 사업추가 등 인력추가요인이 없는 한 원상복구는 불가하며 결원유지의 경우에도 추가 임용은 불가하다.

③ 경상경비 절감의 경우 익년도 대행사업비 편성시 절감액을 감액 편성한다.

④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은 이사회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7.12.29. 세칙 제11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이미 처리된 사무는 이 세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원격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직제규정 시행세칙 등 14개 세칙
일부개정을 위한 세칙>

(2020.09.18. 세칙 제59호)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7.01. 세칙 제66호)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5조 관련)

지급종류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예산 절감	인건비 절감	감축된 인건비 1년분	1인당 2천만원 이내 (건당 1억 한도)	
	경상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감	절감된 경비의 10퍼센트 범위 내		
수입 증대	수입목표 초과 달성	수입목표 초과분의 10퍼센트 범위 내	1인당 100만원 이내	
	영업 및 당기순이익 증가	전년대비 당기순이익 증가분의 10퍼센트 범위 내		

